가. 살수비 설계

1) 기본개념

·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산분진의 억제방법으로 세륜세차시설 및 방진망 등을 설치하고 있으나 토공사 시행시 발생하는 운반차량에 의한 비산분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용가도 포장을 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나 공사용가도 포장이 불가한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살수를 시행하여 비산분진을 억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.

2) 적용기준

가)살수일수

살수일수 = 순공사기간(설계기준 1-9참조) × 80%

나)1일 살수거리

살수거리(D) = 1회 살수거리[√면적(㎡)] ×
1일 살수횟수(8회) × [운반로 폭(6M)/살수폭(3M)]

다)살수량 : 살수두께(1㎜)

라)살수장비

물탱크 : 5,500ℓ 살수폭 : 3M

마)살수설계 적용품

물탱크 한대로 1회 가능한 살수거리(L1)
L1 = 5.5/살수폭(3m)×살수두께(0.001)
Cm = t1+t2+t3+t4
t0 = (t3+t4)/Cm
Q = L1×60/Cm
1일 총작업시간 N
N = D/Q
t1 = 급수호수 취급 및 해체 : 5분
t2 = 급수시간 18분
t3 = 급수원으로부터 작업장까지 운반시간
(V1,V2= 15Km/Hr, ℓ : 현장여건에 따라 적용)
t4 = 살수시간 10분

- 사업지구내 기존 통과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살수거리에 포함할 수 있다.

- 살수에 필요한 물을 현장인근에서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관정비용 또는 수도료를 계상할 수 있다.

- 단, 본 살수비 기준은 단지조성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되 외곽도로공사(일반도로공사 포함)의 경우는 현장여건을 감안한 실살수거리를 산정·계상한다.

- 외부토사반입 및 사토로 인한 지구외의 토공 운반로는 필요한 경우 추가계상할 수 있다.